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고등교육법」에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개정*하고자 함

*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 : 시험의 시기, 방법, 부정행위 조치 등 필요사항 규정

3. 주요내용

가. 교육부장관이 매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·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무 규정

나.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 공표 의무 규정

다. 평가 영역(듣기, 읽기, 쓰기, 말하기) 및 방법(지필시험, 인터넷기반시험) 등 규정

라. 시험 부정행위 시 조치 기준 마련

마. 응시 수수료 부과, 출제·관리요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

바.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정부기관 등의 협조 요청 근거 마련

※ (국외 시험 관련) 외교부, 재외공관, 한국교육원 등

(국내 시험 관련) 보건복지부, 지자체, 대학(시험기관) 등

사. 현행과 같이 국립국제교육원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도록 시험 시행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 위임

※ 단, 동법 시행령에 위임 규정이 어려운 경우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2조제8항에 동일 내용 규정 추진

4. 주요토의과제 : 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3. 11. ~ 4. 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외국인,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, 읽기, 쓰기, 말하기 및 그 밖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.
- ④ 한국어능력시험은 지필시험, 인터넷기반시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.
- 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
- ⑥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.
- ⑦ 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한국어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⑧ 교육부장관은 시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재외공관, 국·공·사립 학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관리 및 운영, 시행기관 지정 및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⑨ 교육부장관은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35조의2(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외국인,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.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, 읽기, 쓰기, 말하기 및 그 밖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. ④ 한국어능력시험은 지필시험, 인터넷기반시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. ⑤ 부정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부정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. ⑥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

현행	개정안
	<u>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.</u> ⑦ <u>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등 한국어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⑧ <u>교육부장관은 시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재외공관, 국·공·사립학교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시험 관리 및 운영, 시행기관 지정 및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 ⑨ <u>교육부장관은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</u>

[별표]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(제35조의2제4항 관련)

조치	부정행위
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성적을 무효 처리	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	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	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	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표한 행위
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시 자격 정지	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	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	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	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4년간 응시 자격 정지	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
【위임사무 관련 개정안】

(1안) 신설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5조의2(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등) ⑨ 교육부장관은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

(2안) 신설
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⑧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	
연 락 처	(044) 203 - 6798